[변경 대비표]

1. 펀드명 :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자투자회사3호(채권혼합)

2. 기준일 : 2022.02.01

3. 효력발생일 : 2022.02.15

4. 정정사유

① 모투자신탁 추가(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②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③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④ 모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정관>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모투자신탁 추가	제1조(상호 및 종류) ①~③ **생략** ④ 회사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추가>**	제1조(상호 및 종류) ①~③ **좌동** ④ 회사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8조(신주의 발행 등) ①~⑥ **생략**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17시 경과 후에 신주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은 신주청약일의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식을 신주청약일의 **제3영업일**에 배정한다.	제18조(신주의 발행 등) ①~⑥ **좌동**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17시 경과 후에 신주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은 신주청약일의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식을 신주청약일의 **3영업일**에 배정한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회사는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의 주주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④ **좌동**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의 주주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모투자신탁 추가	제52조(투자한도)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제1조제4항에서 정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신설>**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주주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2조(투자한도)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제1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1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3. 좌동** ② **좌동**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8조(결산서류 작성 및 회계감사) ① 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3 **생략** ②~④ **생략**	제58조(결산서류 작성 및 회계감사) ① 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3 **좌동** ②~④ **좌동**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	제60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 **생략** ② 공고일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대차**	제60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 **좌동** ② 공고일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재무**

영	**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이라 한다)을 공고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⑤ **생략**	**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이라 한다)을 공고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⑤ **좌동**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모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사무관리회사 보수인하	제61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① **생략** ②투자회사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3월간으로 하며 보수 계산기간 중 투자회사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3.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2월 22일까지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나. 2018년 2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다. 2020년 5월 28일 이후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0	제61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① **좌동** ② 투자회사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3월간으로 하며 보수 계산기간 중 투자회사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3.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1**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9**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신설>**	**④ 이 투자회사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라 한다)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69조(주주에 대한 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 소에 게시하거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8. **생략** ② **생략**	제69조(주주에 대한 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 소에 게시하거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좌동**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3~8. **좌동** ② **좌동**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72조(합병) ① **생략** ②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⑦ **생략**	제72조(합병) ① **좌동** ②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⑦ **좌동**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추가 [개요]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

	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80~90% 수준, 주식에 5~10% 수준을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및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추가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회사가 주로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추가>**-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기업공개 또는 신규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5~10% 투자하여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추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대부분인 80~90% 수준으로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 및 매매차익을 추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회사가 주로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과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는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기업공개 또는 신규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5~10% 투자하여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추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대부분인 80~90% 수준으로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 및 매매차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요약정보]	투자비용 **<변경 전1>**	투자비용 **<변경 후1>**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요약정보]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요약정보]	매입·환매방법 **제X영업일**	매입·환매방법 **X영업일**
모투자신탁 추가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신설1>**
모투자신탁 추가, 총보수인하에 따른 비용일치시점 변경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변경 전2>**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변경 후2>**
모투자신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추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삭제>**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신설2>**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신설3>**
모투자신탁 추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회사는 채권에 80~90% 수준, 주식에 5~10% 수준을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에 투자회사 재산의 60%이상-**<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라. 수익구조 이 투자회사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60%이상-**<추가>**-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과 채권 및 어음 등의 투자수익률과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연동되는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회사는 채권에 80~90% 수준, 주식에 5~10% 수준을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투자회산 재산의 60%이상,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에 투자회사 재산의 100%이하**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4>** 라. 수익구조 이 투자회사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60%이상**,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100%이하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과 채권 및 어음 등의 투자수익률과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연동되는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제 X 영업일**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X 영업일**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대차대조표**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
모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 0.23%** **판매회사보수 : 0.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4%** **주7) 판매회사보수는 2020년 5월 28일부터 연 0.70%에서 연 0.60%로 변경됩니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 0.21%** **판매회사보수 : 0.49%**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12%** **주7) <삭제>**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제 4 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제 4 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신탁업자) **< 추가 >**	(신탁업자) **10.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채권평가회사 사명변경	제4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채권평가**	제4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자산평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제 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제 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설1>

우리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모투자신탁 2 호(채권혼합)

<table>
<tr><td colspan="8">책임운용전문인력</td></tr>
<tr><td rowspan="3">성명</td><td rowspan="3">생년</td><td rowspan="3">직위</td><td colspan="2" rowspan="2">운용현황</td><td colspan="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td></tr>
<tr><td colspan="2">운용역</td><td colspan="2">운용사</td></tr>
<tr><td>집합투자
기구수(개)</td><td>운용규모
(억원)</td><td>최근 1 년</td><td>최근 2 년</td><td>최근 1 년</td><td>최근 2 년</td></tr>
<tr><td>우준식</td><td>1974</td><td>팀장</td><td>20</td><td>1,729</td><td>5.61</td><td>4.51</td><td>-0.81</td><td>5.47</td></tr>
<tr><td colspan="3">운용경력년수</td><td colspan="5">주요 이력</td></tr>
<tr><td colspan="3">6 년 9 개월</td><td colspan="5">2009.06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td></tr>
<tr><td rowspan="3">성명</td><td rowspan="3">생년</td><td rowspan="3">직위</td><td colspan="2" rowspan="2">운용현황</td><td colspan="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td></tr>
<tr><td colspan="2">운용역</td><td colspan="2">운용사</td></tr>
<tr><td>집합투자
기구수(개)</td><td>운용규모
(억원)</td><td>최근 1 년</td><td>최근 2 년</td><td>최근 1 년</td><td>최근 2 년</td></tr>
<tr><td>황우성</td><td>1990</td><td>대리</td><td>38</td><td>43,579</td><td>5.11</td><td>5.54</td><td>-0.81</td><td>5.47</td></tr>
<tr><td colspan="3">운용경력년수</td><td colspan="5">주요 이력</td></tr>
<tr><td colspan="3">2 년 6 개월</td><td colspan="5">2016.04 ~ 2017.08 나이스 P&I 일반채권평가
2017.09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td></tr>
<tr><td colspan="8">부책임운용전문인력</td></tr>
<tr><td rowspan="3">성명</td><td rowspan="3">생년</td><td rowspan="3">직위</td><td colspan="2" rowspan="2">운용현황</td><td colspan="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td></tr>
<tr><td colspan="2">운용역</td><td colspan="2">운용사</td></tr>
<tr><td>집합투자
기구수(개)</td><td>운용규모
(억원)</td><td>최근 1 년</td><td>최근 2 년</td><td>최근 1 년</td><td>최근 2 년</td></tr>
<tr><td>이호석</td><td>1989</td><td>대리</td><td>28</td><td>2,221</td><td>2.34</td><td>-</td><td>-0.81</td><td>5.47</td></tr>
<tr><td colspan="3">운용경력년수</td><td colspan="5">주요 이력</td></tr>
</table>

1 년 2 개월	2016.03 ~ 2018.04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 2018.04 ~ 2019.02 비욘드자산운용 리서치 2019.04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변경 전2>

모집합투자기구 / 자집합투자기구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자투자회사 3 호(채권혼합)	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변경 후2>

모집합투자기구 / 자집합투자기구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모투자신탁 2 호(채권혼합)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 자투자회사 3 호(채권혼합)	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	회사 자산총액의 100%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우리뱅크플러스 공모주 10 증권 모투자신탁 2 호 (채권혼합)	주요 투자대상	✓ 주식에 10%이하 투자 ✓ 채권에 40%이상 투자 ✓ 어음 등에 60%이하 투자 등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공모주 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대상 채권 및 주식의 성과와 유사한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신설2>

■ 우리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모투자신탁 2 호(채권혼합)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①	**주식**	10%이하(다만,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과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
②	**채권**	40%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등**	6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⑤	**채권관련 집합투자 증권등**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⑥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 채권이나 주식 ·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것
⑧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것
⑨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일정기간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⑪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⑫	**금융기관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⑬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위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설3>

■ 우리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모투자신탁 2 호(채권혼합)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③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장내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집합투자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⑥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	**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행위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⑤~⑨, 투자제한 ②~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설4>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가. 채권투자전략** 1)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금리 하락기에 가중평균잔존만기를 확대하고 금리 상승기에 축소하여 자본이득 최

대화 및 자본 손실 최소화를 추구하는 전략

※ 가중평균잔존만기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들 각기 발생하는 기간으로 가중하여 현재가치화한 합을 채권의 가격으로 나눈 것. 이는 채권에 투자된 원금의 평균회수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수익률곡선 전략

상대적으로 가장 가파른 수익률곡선 구간으로 지속적인 자산배분 비율조정 시행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권보유 수익 극대화

3) 업종별 배분 전략

경제 지표 및 수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업종별 배분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거나 덜 오를만한 업종에 투자 비중을 늘림

<위험관리전략>

i) 신용위험관리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업의 매출액 및 현금흐름,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밖의 시장정보나 그룹의 재무지원 가능성, M&A Issue 등을 고려하여 투자가능 기업군(투자 Universe)를 사전적으로 작성한 후 내부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별된 기업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i) 이자율 위험관리

자산운용회사는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거래 및 스왑거래를 활용하여 헤지거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때 자산가격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포지션을 시장에서 취하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예측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자산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 방향의 자산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손실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iii) 유동성 위험관리

우량 채권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및 안전정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펀드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나. 주식투자전략

1)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하여 공모주식에 주로 투자

2)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주식이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 후 대량 거래 및 상승 둔화 시 매도하여 주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

3) 실적이나 장세전망에 따른 단순한 장기보유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 시장의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우량주를 선별하여 기간확약을 통한 물량의 확보로

	수익의 극대화 및 차별화를 추구 **<위험관리전략>** 시장 리스크 발생시 대내외 환경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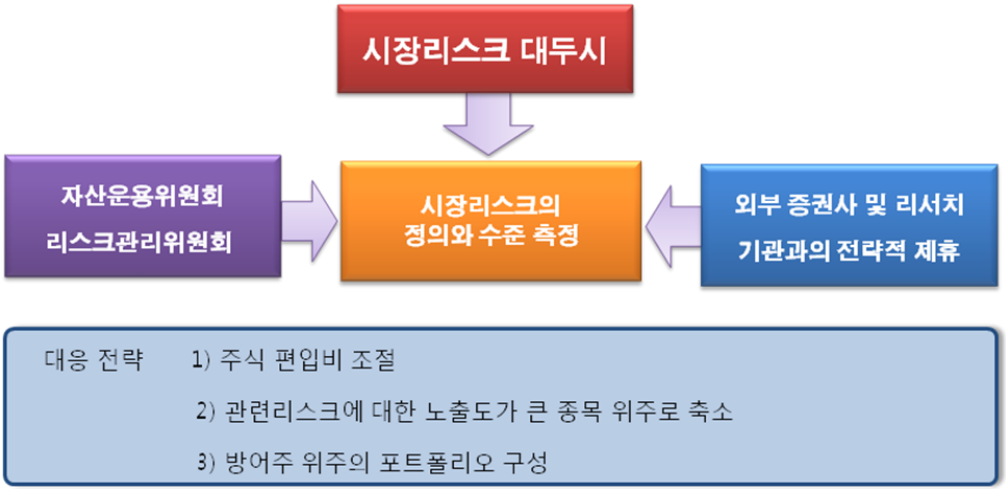 ■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위기 모니터링 지표를 통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체계를 수립. 회사의 AUM 하락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별도 위기관리기준을 통하여 펀드의 유동성위기(대량환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기준 초과시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대응.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80~90% 수준, 주식에 5~10% 수준을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및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추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회사가 주로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추가>**-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기업공개 또는 신규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5~10% 투자하여 상장에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회사가 주로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과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는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기업공개 또는 신규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

	따른 시세차익 등을 추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대부분인 80~90% 수준으로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 및 매매차익을 추구합니다.	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5~10% 투자하여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추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대부분인 80~90% 수준으로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 및 매매차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투자비용 **<변경 전1>**	투자비용 **<변경 후1>**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변경 전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없음	0.90	0.60	1.17	1.1469	117	238	364	631	1,393

<변경 후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없음	0.742	0.49	1.17	0.9889	101	206	315	546	1,211